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숭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6718

발의연월일: 2024. 12. 19.

발 의 자: 백승아 · 박홍배 · 강유정

진선미 • 이기헌 • 김동아

최기상 · 김남근 · 김준혁

박해철 · 임미애 · 오세희

이광희 · 조계워 의원

(14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국가교육위원회의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하되 일정한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비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회의록은 작성 ·보존하도록 하고 있음. 하지만, 회의 결과의 공개 방식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재량에 맡겨져 있고, 위원회 소속의 국민참여위원회나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하지만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하여 교육정책 추진을 위하여 설립된 기구로 국민 의견수렴·조정을 거치는 모든 과정과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으므로, 공개 대상이 되는 회의의 범위를 확대하고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로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국민참여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를 포함한 국가교육

위원회 회의의 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구체적 사항을 법률에 명 시하는 한편 비공개사유를 제한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 운영의 민주 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5조, 제15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 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2.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회의록의 작성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 및 녹음기록을 작성 • 보존하여야 한다.

- ② 회의록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속기방법으로 작성한다.
- 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 일시
- 2. 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
- 3. 제15조제4항에 따른 회의참석자의 성명
- 4. 상정안건, 심의내용 및 의결사항

- 5. 표결 수
- 6. 위원장의 보고
- 7.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회의록은 회의 종료일 이후 14일 이내에 공표한다.
- ④ 회의록 및 녹음기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 재한다.
- ⑤ 제16조에 따른 국민참여위원회, 제17조에 따른 전문위원회 및 제 18조에 따른 특별위원회의 회의록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를 준용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회의록의 작성 등에 관한 적용례) 제1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이후 국가교육위원회, 국민참여위원회, 전문위원회 및 특별위원회가 개최하는 회의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회의) ①・② (생 략)	제15조(회의) ①・② (현행과 같
	승)
③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③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정하는 경우에는 그 의결로 공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u>있다.</u>
<u><신 설></u>	1. 국가안전보장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u><신 설></u>	2. 개인·법인 및 단체의 명예
	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
	<u>정되는 경우</u>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u> <신 설></u>	제15조의2(회의록의 작성 등) ①
	위원회는 회의록 및 녹음기록
	을 작성·보존하여야 한다 <u>.</u>
	② 회의록은 다음 각 호의 사
	<u>항을 포함하여 속기방법으로</u>
	작성한다.
	<u>1. 개의, 회의 중지 및 산회 일</u>
	시
	2. 출석위원의 수 및 성명
	3. 제15조제4항에 따른 회의참

석자의 성명

- 4. 상정안건, 심의내용 및 의결 사항
- 5. 표결 수
- 6. 위원장의 보고
- 7. 그 밖에 위원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회의록은 회의 종료일 이후 14일 이내에 공표한다.
- ④ 회의록 및 녹음기록의 내용은 삭제할 수 없으며, 발언을 통하여 자구정정 또는 취소의 발언을 한 경우에는 그 발언을 회의록에 기재한다.
- ⑤ 제16조에 따른 국민참여위 원회, 제17조에 따른 전문위원 회 및 제18조에 따른 특별위원 회의 회의록에 대해서는 제1항 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